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안 검토보고

행정기획위원회(기획예산과)

의안번호	제216호
제 출 자	성북구청장(2023. 11. 7.)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안
검 토	전문위원 정진만

1. 제안이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 및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나.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이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다.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라.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마.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바.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1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 다. 입법예고 : 2023. 09. 27. ~ 10. 17.(20일),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법률 제18708호, 2022. 1. 4.,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행 사항¹⁾과 조례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국제연합(UN)은 1992년 ‘리우선언’²⁾을 시작으로, 2002년 ‘요하네스버그선언’³⁾,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⁴⁾등을 채택하면

-
-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사회·환경 전 분야에서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 원칙을 따라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미래 발전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 또는 완화하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 및 주요 국가의 정책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사업자·국민 및 민간단체에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국민들이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국민들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 2) 1992년 6월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지구 정상 회의에서 채택한 환경과 개발에 관한 기본 원칙을 담은 선언문. 1972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인간 환경 선언이 있는 지 20년 만에 지구인의 행동 강령으로서 150여 개국 대표가 서명하여 채택되었으며, 27개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 3)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회의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 이행계획〉의 주요 추진내용은 빈곤퇴치, 환경친화적 소비 및 생산 패턴, 자연자원의 보전관리, 세계화, 건강, 이행수단, 제도체제, 양성평등, 교육 등 각 분야

서 전세계적으로 경제성장·환경보전·사회발전의 균형과 조화, 포용적 사회를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⁵⁾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2000년 대통령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발족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2007년)하였으며, 국가지를 넘나드는 정책 이슈(Cross-cutting issues)들로 이루어져 있음.

4)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또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밀레니엄개발목표(MDGs)를 종료하고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새로 시행되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다. 인류의 보편적 문제 (빈곤종식, 질병, 교육, 성평등, 난민, 분쟁 등)와 지구환경문제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경제 사회문제 (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 소비, 사회구조, 법, 대내외 경제)를 2030년까지 17가지 주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해결하고자 이행하는 국제사회 최대 공동목표다. 유엔에서는 공식적으로 “Global Goals”라는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다.

5) 지속가능발전이란 인구증가와 경제성장 속에 파생되는 전 지구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자연과 공존하면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1987년 UN에 의해 구성된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의 '우리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보고서에서 “미래 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능력의 손실 없이, 현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개발”이라고 정의되었다.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할 구체적인 노력으로 2개의 선언, 1개의 성명, 그리고 2개의 협약을 채택하였고, 보다 더 효과적인 지구환경보전 전략 수립을 위하여 '유엔지속개발위원회(UNCSD)'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선언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원칙적인 내용의 '리우선언'과 리우선언 이행을 위한 21세기 지구환경보전 실천 강령으로 정책목표와 지침을 제시한 '의제21'(Agenda 21)이 있다.

우리나라 역시 1996년 '의제 21'을 국가실천계획으로 수립하여 UN에 제출하였고, 관계부처간 협의와 조정을 수행할 범정부·범국가적 기구로서 2000년 9월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를 설치, '의제21'의 국가실천계획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속가능발전 전략 등을 수립·시행함.

○ 이후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고 지속가능발전이 녹색성장의 하위개념으로 되면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이 축소되어 환경부 소속으로 격하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지속가능 발전법」으로 개정되었음.

○ 그러나 경제·사회·환경을 포괄하는 “지속가능발전”이 경제·환경만을 포함하는 “녹색성장”에 비해 포괄적인 상위개념인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관련 정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2022년 1월 4일 제정됨(시행 2022. 7. 5.)

○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4조에서는 법 제8조⁶⁾에 따라 20년을 단위로 하는 성북구 지속가능발

6) 제8조(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그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이하 “지방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지방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 전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법 제9조제3항7)**에 따라 5년마다 구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6조부터 제7조에서는,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에 따른 위원회의 통보 등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부터 제9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지속가능발전위원회8)**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임

1. 국가기본전략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의 수립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7) 제9조(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8) 법 제20조(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군·구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 실정에 맞추어 지방위원회를 둘 수 있다.

기, 수당 등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5조부터 제16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조사·연구의 의뢰, 교육·홍보, 보조금 지원 등을 명시하였음.

○ 본 제정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 및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13호 (생략)

③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두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④ 지방위원회의 명칭·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